

●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 행령

[일부개정 2000.3.28 대통령령 제16762호]

제1조 (목적) 이 영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세출예산의 배정등) ①법 제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투융자특별회계(이하 “이 회계”라 한다)의 세출예산이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세출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. <개정 1994.12.23, 1999. 5.24>
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배정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(출연예산을 제외한다)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배정하고, 그 사실을 당해 세출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(이하 “관련중앙관서의 장”이라 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1994.12.23, 1999.5.24>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을 배정받은 재정경제원장관은 관련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그 사실을 관련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1994.12.23>

제3조 (결산보고서의 작성) ①재정경제원장관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세출예산의 총괄결산보고서를

작성한다. <개정 1994.12.23>

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집행결과를 통보받은 바에 의하여 그 소관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. <개정 1994.12.23>

제4조 (월별자금소요내역서의 제출등)

①이 회계의 세출예산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을 관장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예산이 확정된 후 월별자금소요내역서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4.12.23>

②이 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 또는 예탁받은 기관 및 기금의 관리자는 당해 자금의 운용계획 및 운용상황을 재정경제원장관과 당해 자금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운용·관리하는 기금이 자금을 예탁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1994.12.23>

제5조 (출자계정의 세입) ①법률이나 기부채납등에 의하여 국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으로부터의 수입 및 그 매각수입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계정의 세입으로 한다.

②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출자할 출자금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계정의 세입으로 전입하지 아니한다.

제6조 (세입금수납 및 세출금현금지급사무의 위탁) 재정경제원장관은 이 회계의 출자계정의 세입금수납에 관한 사

무와 세출금중 현금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제8조 각호의 융자대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1994.12.23>

제7조 (융자금등의 금리와 기간) 이 회계의 융자금·예탁금 및 예수금의 금리와 융자·예탁 또는 예수의 기간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자금운용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이 이를 정한다. <개정 1994.12.23>

제8조 (융자대상기관)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융자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1994.12.23>

1.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
2.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
3.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
4.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
5.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
6.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한 한국외환은행
7. 삭제 <1997.11.29>
8. 삭제 <1996.3.28>
9.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관

제9조 (차관계정의 세입)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관계정의 세입에 있어서 외자도입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되지 아니하는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재정

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<개정 1994.12.23>

②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재정차관자금의 제수입에는 당해 자금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대차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수수료등이 포함된다.

제10조 (여유자금등의 예탁계획서의 제출) 특별회계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운용하거나 그 운용을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(이하 이 조에서 “우체국예금”이라 한다)을 운용하는 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1항의 여유자금 또는 우체국예금중 이 회계에 예탁할 예탁금에 관한 다음 회계연도의 예탁계획서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4.12.23, 2000.3.28>

제11조 삭제 <1994.12.23>

제12조 (지방채의 인수절차등) ①내무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발행계획서와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4.12.23, 1999.5.24>

②이 회계가 인수할 수 있는 지방채의 발행의 조건 및 그 인수절차등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과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

고자 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. <개정 1994.12.23>

제13조 (심의회의 구성)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재정경제원차관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. <개정 1993.3.6, 1994.12.23, 1996.8.8, 1999.5.24>

1. 재정경제원 · 내부부 · 농림부 · 해양수산부 · 상공자원부 · 건설교통부 · 보건복지부 · 노동부 · 정보통신부 및 기획예산처소속의 1급공무원(1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)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인
2. 한국은행부총재
3. 재정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
제14조 (위원장등의 직무)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,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, 그 회무를 통할한다.

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원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1994.12.23>

③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원중에서 당해 위원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5조 (심의회의 심의사항)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1994.12.23>

1. 이 회계의 융자금 · 예탁금 및 예수금의 금리와 융자 · 예탁 또는 예수의 기간
2. 이 회계가 인수할 수 있는 지방채의 발행조건 및 그 인수절차등
3. 기타 이 회계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사항

제16조 (심의회의 회의) ①심의회의 회의(이하 이 조에서 “회의”라 한다)는 제15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7조 (심의회의 간사) ①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재정경제원 국고국장이 된다. <개정 1994.12.23>

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.

제18조 (심의회의 운영세칙)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 <제12454호, 1988.5.21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재정자금의 운용 및 예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융자금 · 예탁금 및 예수금의 금리와 융자 · 예탁 및 예수의 기간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

여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.

제3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국민투자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5항제1호중 “자금관리특별회계”를 “재정투융자특별회계”로 한다.
②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중 “자금관리특별회계”를 “재정투융자특별회계”로 한다.

부칙(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) <제13870호, 1993.3.6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55> 생략

<56>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제1호중 “상공부 · 동력자원부”를 “상공자원부”로 한다.

<57> 내지 <188> 생략

부칙(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) <제14438호, 1994.12.23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
제5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⑬생략
⑭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· 제3항, 제3조제1항 · 제2

항, 제4조제1항 · 제2항, 제6조, 제7조, 제8조제9호, 제9조제1항, 제10조, 제12조제2항, 제13조제2항제3호, 제15조제3호중 “재무부장관”을 각각 “재정경제원장관”으로 하고, 제2조제1항 · 제2항, 제12조제1항중 “경제기획원장관”을 각각 “재정경제원장관”으로 하고, 제13조제2항중 “재무부차관”을 “재정경제원차관”으로 하고, 제13조제2항제1호중 “경제기획원”을 “재정경제원”으로 하고, “재무부”를 삭제하며, 제14조제2항중 “재무부”를 “재정경제원”으로 하고, 제17조제1항중 “재무부 이재국장”을 “재정경제원 국고국장”으로 하며, 제11조를 삭제한다.

⑮내지 <327> 생략

부칙(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) <제14446호, 1994.12.23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생략

제3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41> 생략

<42>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제1호중 “보건사회부”를 “보건복지부”로 한다.

<43> 내지 <140> 생략

부칙(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) <제14447호, 1994.12.23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〈단서 생략〉

제2조 내지 **제4조** 생략

제5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〈38〉 생략

〈39〉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중 “건설부”를 “건설교통부”로 하고, “교통부”를 삭제한다.

〈40〉내지 〈205〉생략

부칙(국민은행법시행령) 〈제14959호, 1996.3.28〉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④생략
⑤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8호를 삭제한다.

⑥내지 ⑩생략

부칙(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) 〈제15135호, 1996.8.8〉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**제6조** 생략

제7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⑭생략
⑮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제1호중 “농림수산부”를 “농림부·해양수산부”로 한다.

〈16〉내지 〈116〉생략

제8조 생략

부칙(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) 〈제15516호, 1997.11.29〉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②생략
③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7호를 삭제한다.

④내지 ⑤생략

제3조 내지 **제4조** 생략

부칙(기획예산처직제) 〈제16326호, 1999.5.24〉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**제3조** 생략

제4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〈78〉 생략

〈79〉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중 “재정경제원장관”을 “기획예산처장관”으로 하고, 동조제2항중 “재정경제원장관은”을 “기획예산처장관은”으로, “재정경제원장관에게”를 “재정경제부장관에게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중 “재정경제원장관”을 “재정경제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제1호중 “체신부 및 총무처”를 “정보통신부 및 기획예산처”로 한다.

〈80〉내지 〈109〉생략

부칙(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) 〈제16762호, 2000.3.28〉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⑪생략
⑫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중 “체신예금”을 각각 “우체국예금”으로, “체신부장관”을 “정보통신부장관”으로 한다.

⑬내지 〈16〉생략